

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환경수자원위원회 김경훈 의원

□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김경훈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 외 33명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,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

□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도시숲등 조성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경관 자원의 조성·보전·활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‘경관 자원’을 반영한 도시숲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.

□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,

안 제6조제2항제8호를 신설하여 도시숲등의 경관 자원 조성·보전·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
□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,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